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호 21-10

발의년월일: 2021. 1.

발 의 자:조영덕,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김영미, 김종선, 김진천, 서종수, 신종갑, 이민석, 이필례, 이홍민, 장덕준, 정혜경,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1. 주 문

아동성범죄, 살인 등 흉악범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의 조 속한 제정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가. 지난 12월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조〇〇이 12년 징역 형을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보호관찰관 배치, 방범초소 설치 및 순찰 등 다방면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 의 불안과 분노는 거세지고 있으며, 흉악범 시설 수용을 도모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음.
- 나.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흉악범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도록 하는 법으로서,

법원이 선고한 형기를 마친 후에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수용 생활을 하는 것이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피해자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새로 도입된 성범죄 관련 보안 처분이 재범 방지 효과가 미미하므로, 범죄자의신체의 자유와 대비되는 일반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관점에서 재논의 될 필요가 있음.
- 라. 아동에 대한 인권의 유린과 생명의 침해는 불가역적이고,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는 가족과 지역사회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으므로, 형기를 마친 범죄자들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성공적인 재사회화 후 사회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음.
- 마. 이에 우리 의회는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하되,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호수용의 적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여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함.

3. 이송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 힘대표. 민생당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 4. 붙임: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아동성폭력, 연쇄살인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의 불관용의 원칙 아래 적정한 형벌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지 않고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지 않는 처벌을 종종 해왔다.

지난 12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이 12년 간 복역 후출소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극악무도한 성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국민 전체가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다. 흉악범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복귀에 대비하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과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의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보호수용이란 살인·성폭력과 같은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일정기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관리 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으로서, 수용기간 동안 상담치료나 직업 교육 등을 진행해 교화한 뒤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수용법 제정을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했지만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우려,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모호함, 인권 침해 논란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복역 후 출소한 성범죄자 등 흉악범들이 형사적 책임을 다하였다고 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재범을 방조하고 양산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한 사람의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피해자 등 다수의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에 한정하고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등 보호수용 적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수용 적용기준 시점을 범죄행위시가 아니라 사회복귀시점으로 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 한다면,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일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일 것이다.

이에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흉악범죄로부터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 2021. 0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